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지침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
CONSUS ASSET MANAGEMENT CO.,LTD.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지침

제정 2017. 06. 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그 외의 관련법규(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로서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신용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회사는 인가 및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개인고객과의 거래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이 지침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적용된다.

제4조(신용정보 수집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②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③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④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⑤ 관련법규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제5조(신용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다른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또는 신용조회 회사와 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제①항의 신용정보 제공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보관기간 및 동 기관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 또는 반납에 관한 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위탁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감독기관에 보고한다.
③ 제①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회사는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계약의 내용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신용정보 관리•보호)
①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며,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단, 종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우이거나, 회사의 자산규모,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상 다른 임원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임원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사.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아.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②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직원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직급별로 차등 부여하고 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유출•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누설의 통지)
① 회사는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나.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다.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라.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응조치 및 구제절차

마.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제①항의 신용정보 누설에 대한 통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내부절차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11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관련법규에서 정한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세부절차는 관련법규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신용정보활용 체제의 공시)

① 회사는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용정보 활용체제(별지1)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가.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다.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라. 신용정보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마.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사. 신용정보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② 제①항의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변경한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거래처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인 비밀을 업무목적 이외의 사유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0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신 용 정 보 활 용 체 제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
CONSUS ASSET MANAGEMENT CO., LTD.

신 용 정 보 활 용 체 제

제정 2017. 06.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Ⅰ.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1. 이용목적
   1) 신용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2) 해당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3)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신용정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등록번호), 개인기업/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2) 신용거래정보
      가. 개인신용 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나. 기업신용 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 현황 등

      다. 금융질서 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1)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신용정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개인신용 거래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신용정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Ⅲ.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전사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Ⅳ. 신용정보의 취급 위탁

: 현재 회사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신용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본인 신용정보 제공·열람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등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Ⅵ.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1.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소속: 준법감시인

이름: 박상훈 이사

이메일: r2t2@consus.co.kr

전화번호: 02-2077-5012

2. 신용정보보호 담당자

소속: 컴플라이언스팀

이름: 김형관 차장

이메일: amteam7@consus.co.kr

전화번호: 02-2077-5042